

의과대학 학생소명위원회 규정

제정일: 2019. 03. 12.

개정: 2020. 06. 0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 소명 기회제공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설치되는 학생 소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무부학장, 교육부학장, 학생부장으로 한다.

③ 필요시 교직원, 학생, 대학본부 보직자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④ 학생이 소명을 신청한 사안과 이해상충이 있는 자는 소명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05.25.>

제3조(기능) 위원회는 성적, 유급, 졸업유예, 퇴학 등의 결정 사유에 대해 해당 학생이 요청한 소명기회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개정, 2020.05.25.>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학생이 소명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거나 위원장 요청 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삭제 <2020.05.25.>

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의 관련인을 참석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 내용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5조(상담, 소명기회 제공 및 심의절차 등) ① 학생은 제3조의 결정 사유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로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제1항의 청구에 관하여 비밀 및 소명 기회를 보장받으며,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의 소명 청구에 대한 심사 의무를 가지며, 학생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교수(교과목 성적 책임교수, 학생부장, 해당 학년 지도교수, 담임반 지도교수 등)와의 면담을 주선한다. 면담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토의한 후, 학생소명 내용 및 그 처리 결과를 의과대학 운영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회는 그 처리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필요시 후속 조치

(추가소명 기회 부여, 추후 관찰 등)를 시행할 수 있다.

⑤ 학생의 소명에 대한 지도방법 및 절차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⑥ 상세절차는 「의과대학 학생소명 지침」에 따른다. (신설, 2020.05.25.)

제6조(규정준용)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부 칙 <규정신설, 2019.03.12.>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